

제27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1. 4. 23.(금)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주민세 과세체계 및 용어 정비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납부시기	구분	납세의무자	납부시기
균등분	개인	8월	개인분	좌동	좌동
	개인사업자	8월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 법 인	8월
	법인	8월			
재산분	사업자	7월	종업원분	좌동	좌동
종업원분	사업자	매월			

- 1) 현행 5개 세세목을 3개로 간소화하였으며,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기존 부과분이었던 개인사업장 및 법인균등분을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정
- 2) 안 제3장제1절(제6조), 안 제3장제2절, 안 제7조, 안 제8조

나. 조문 현행화 정비(안 제5조제2호 내지 제3호, 안 제15조)

- 1) “증빙서류” “수불상황” → “증명서류” “출납상황”
(안 제5조제2호 내지 제3호)
- 2)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할 세액이” → “주택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세정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납세자 중심의 과세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편 사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시세조례 및 시행규칙, 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 시세 조례 및 시행규칙
 - 주민세 과세체계 및 용어를 개편
 - 단순조문 정비
- 지방세 감면 조례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감면 일몰기한 연장(5개 조항 적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단순 과세체계 및 용어 정비, 감면 규정 신설에 해당)

4. 작성자

산업경제국 세정과장 유희근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 8. (생략)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